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1년 11월 14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1년 11월 14일

라. 상정일자 : 2001년 11월 20일

제 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생활복지국장 김 인 중

나. 제안이유

○ 현 조례 운영에 있어 부적절한 규정 개정

다. 주요내용

○ 조례 제9조제1항제3호를

• 지출원 : 가정복지업무담당 ⇒ 출납원 : 노인업무담당주사 로

라. 참고사항

○ 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('98. 4.22)

○ 타 기금관련조례

○ 지방재정법 제110조(기금운용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경 도

- 현 조례 제9조에 대한 회계관직 지정에 있어 지출원의 규정만 있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하기 위해 지출원을 출납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임.
- 타 기금 관련 조례 및 준칙과도 일치하는 내용으로 사료되오며 저촉사항 없음.
- 조례 제10조(결산 및 보고) 중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80일 이내로 수정되어야 할 내용임.(지방재정법 개정'99)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안 가결